

제429회 국회  
(정기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5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5)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0)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1)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5)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3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5)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5)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9)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2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3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3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3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3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3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3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3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3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5)
  3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5)
  3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3)
  4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4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4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6)
  44. 과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4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4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4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4
2.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 4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 6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9) ..... 6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4) ..... 6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3) ..... 6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5) ..... 6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0) ..... 6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7) ..... 6
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1) ..... 6
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9) ..... 6
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9) ..... 6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 6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5) ..... 6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6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33)	6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6)	6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5)	6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6)	6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5)	6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3)	6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3)	6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8)	6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9)	6
2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6
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6
2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6
3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6
3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6
3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6
3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6
3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6
3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6
3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6
3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5)	6
3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5)	6
3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40.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3)	6
4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7
4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7
4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6)	7
44. 과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7
4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4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7
4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7
4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49.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2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올해 국정감사 실시를 위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이어서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며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 IR 행사 동행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위원장이 양간사님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1.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3분)

○위원장 임이자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국정감사 일정과 대상 기관 등을 정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계획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이고 감사 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총 42개 기관입니다. 감사반의 경우 중앙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였고 10월 23일과 24일 진행되는 지방감사는 반을 나누어서 감사 1반은 영남 권역을, 감사 2반은 호남·충청 권역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감사반의 구성은 추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양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기관별 감사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계획서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10시35분)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기관이 소관 업무 전반을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총 1만 1193건의 서류제출요구에 따라 각 기관으로 하여금 감사일 7일 전까지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 이후에 추가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법 제12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기관들은 오늘 의결된 보고 및 서류제출 등을 성실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향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서 의결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규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임이자 말씀하십시오.

○차규근 위원 조국혁신당 차규근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본 위원은 증인 2명과 참고인 2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섭단체 간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신청한 네 분 중에 두 분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고요. 기획재정부가 공공 기관을 총괄하는 만큼 현장에서 근로조건과 처우 문제를 직접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참고인으로 요청했습니다.

또 나머지 두 분은 기업인입니다. 첫째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입니다. 그는 다수 계열사 심지어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된 회사들까지 포함해서 수백억 원의 보수를 받아 왔습니다. 현행 법인세법은 과도한 인건비에 대해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과도한 보수 수령이 배당 유인을 약화시켜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삼성생명 홍원학 대표이사입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삼성전자 지분 회계 처리 문제뿐 아니라 유배당 계약자의 몫으로 계열사 지분을 매입하고도 그 가치를 예외적으로 평가하는 고질적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른바 삼성생명법을 발의한 것도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제 삼성생명 홍원학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모 언론에서 홍원학 대표이사를 제가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기사를 쓰자마자 30분도 안 되어서 기사가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 어떤 세상인데 증인 신청을 막고 언론을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정 기업의 예외와 특혜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끊어야하는 일이고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안들을 국민 앞에서 명확히 따져 묻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부디 양당 교섭단체 간사님들께서는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셔서 본 위원이 신청한 네 분 모두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석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이자 차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당 간사님들께서 의견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고 양 간사 간의 협의에 본 위원장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9)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4)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3)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5)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0)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7)
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1)
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9)
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9)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5)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33)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6)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5)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6)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5)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3)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3)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8)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국유재산특례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9)
2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2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3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3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3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3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3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3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3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3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5)
3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5)
3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3)

4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4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4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6)
4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4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4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4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39분)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재정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경제재정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1건의 법률안은 원안으로, 1건의 법률안은 수정안으로 그리고 33건의 법률안은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정성호·최수진·한병도·문진석·안도걸·임광현·차규근·정일영·이원택·박홍근·이종배·윤준병·이해민·김영호·정태호·이용선·김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1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산안 첨부서류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하며 예타 시 지역균형 발전 분석 등을 수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행방안 및 이행 실적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9월 당해 연도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국세감면율 한도 초과 시 그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장기사용허가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성훈·김태년·김선민·남인순·한지아·전진숙·김준혁·송언석·최은석·조은희·김민전·송재봉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담배 정의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율하는 것입니다.

다만 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관련 소상공인의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 후 2년간 지정소매인 거리제한을 유예하도록 부칙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업종전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이 법

시행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이 포함됨에 따라 과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무니코틴 등 유사니코틴의 제조·유통·판매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인체 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및 니코틴 원액 유통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부당한 자체조달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계약 체결이 완료된 건은 수정·변경 요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소위원회 박수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박수영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의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태호 의원안, 임광현 의원안, 박홍근 의원안 및 정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한 것으로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협력·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젊은 청년들의 세무법인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무법인 설립의 인적 요건을 현행 세무사 5인에서 세무사 3인으로 완화하되 협업을 통한 전문성 강화 측면을 고려하여 5인 이상의 세무사를 둔 세무법인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무사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불법적인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몰수·추징 대상에 세무사 명의를 빌린 자와 이를 알선한 자를 추가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홍근·김현정 두 분 의원안과 정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해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포탈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세무사법과 마찬가지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관세사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관세사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에 따른 금품 및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박성훈 위원 예, 그렇습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담배의 정의를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포함을 시켜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9년 만에 통과된 것은 청소년의 건강 보호 그리고 새로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담배의 정의가 37년 만에 바뀌는 그 현장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뜻을 모아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이미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셔 가지고 이미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니코틴으로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1대국회 당시에도 담뱃세의 부과 대상을 연초 잎 외에 뿌리 및 줄기 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규제를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규제의 사각지대를 우회하려는 그런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사니코틴 등 새로운 형태의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병합심사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결국 중독성을 유발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흡연을 일으키는 제품은 형태에 상관없이 담배로서 규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재 위원님들께서도 선제적으로 청소년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조금 더 전향적인 그런 입장을 가져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박성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유사니코틴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부대의견에 달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마지막 마무리발언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

○안도걸 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안도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안도걸 위원 예.

○위원장 임이자 하십시오.

○안도걸 위원 이번의 국가재정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안한 것 중에 헌법이 정한 국회의 예산 심사·확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세입

오차가 크게 발생할 경우 세입경정을 추경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제안을 했는데요, 일부 야당 위원님들의 반대로 이게 반영이 되지 못해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의 세입결손이 지난 정부 때 발생을 했지요. 그 경우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입을 변경시키고 그에 따라서 대규모의 세출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이것을 독단적으로 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큰 규모의 세입 변경과 세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받고 변경토록 하는 것이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맞고 또 정부의 독단적인 재정 운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 편성의 요건을 좀 완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아마 이런식의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추경 편성을 방만하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제대로 세입과 세출을 국회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의견을 물어서 변경토록, 재정 운용토록 하는 내용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께서 이 법안의 제정 취지를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주시고 다음 법안 심사 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형 위원** 저 짧게 하나만.

○**위원장 임이자** 예, 오기형……

○**오기형 위원** 방금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감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두 번 연속 발생하고 그 세수결손에 관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논쟁도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세수추계가 제대로 됐느냐 또 사전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풀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데 과거에는 하고 그때는 왜 안 했느냐, 실제 국회랑 제대로 소통하는 것이냐 이것은 이제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논쟁하는 주요 지점이었습니다. 예산안의 처리 기준 또는 서로 어떤 수준의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한 법안 논쟁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과 연동된 것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아직 채택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요구했던 것은 예결특위에서도 그렇고 기재위에서도 그렇지만 실제 예산 돌려막기, 기금 돌려막기 했던 것들에 대해서 예정처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라는 겁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재정청문회를 하자는 주장을 무수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직 보고서 채택이 안 돼서 되게 유감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이에 관련된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조건에서 그 이후의 절차들이,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하나씩하나씩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서로가 변화와 반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점에 대

해서도 양당 간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걸 위원님이나 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극히 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돼서 양당 간사님들, 특히 경제재정소위원회 정태호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말씀들을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2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5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8항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9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담배사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고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안의 개정 내용과 함께 유사니코틴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등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마련한 다양한 조치들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0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5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및 제4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49.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56분)

○위원장 임이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9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청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4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 제22대 국회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들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와 자구를 정리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일 제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및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가 오늘 의결한 대로 올해 국정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

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 ○출석 위원(22인)

권영세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대출 박민규 박성훈 박수영 안도걸 오기형  
윤영석 이소영 이인선 임이자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진성준 차규근 천하람  
최기상 최은석

### ○청가 위원(3인)

박홍근 유상범 정성호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정지은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제2차관 임기근

차관보 윤인대

재정관리관 안상열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세제실장 박금철

국고국장 황순관

재정관리국장 박봉용

대외경제국장 민경설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관세정책관 최재영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 9. 5.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9)

이상 9건 9월 8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7)

이상 5건 9월 9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0)

이상 5건 9월 10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교홍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교홍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8)

이상 6건 9월 11일 회부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1.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1.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1.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1.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이상 4건 9월 1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2.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2.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2.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이상 3건 9월 15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9)

이상 5건 9월 16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1)

이상 7건 9월 17일 회부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이상 4건 9월 18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11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7)

이상 3건 9월 19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3)

이상 5건 9월 2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2.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1)

9월 23일 회부됨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9. 23.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1)

이상 5건 9월 24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대통령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제35781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부령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제1140호	제정	기획재정부